

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4-50호

임실군의회 김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임실군의회 회의규칙」 제 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4년 11월 19일

임실군의회 의장



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(김종규 의원 대표발의)

1. 개정이유

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의 직급·직렬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무과장의 직급·직렬 추가(안 제2조제1항, 안 제2조제2항)

나. 전문위원별 직급·직렬 추가(안 제3조제1항(별표))

3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·법인 또는 기관·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: 2024년 11월 23일까지

나. 제출방법: 서면·우편·전자우편·직접방문

- 1) 주 소: (55927)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, 임실군의회(의회사무과)
- 2) 전 화: 063-640-2883, 팩스 063-640-2699
- 3) 전자우편:charity81@korea.kr

4. 개정안: 붙임

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지방행정사무관·지방농업사무관·지방시설사무관·지방
녹지사무관”을 “지방행정사무관·지방농업사무관·지방시설사무관·지방
녹지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방녹지주
사”를 “지방녹지주사, 지방공업주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사무과장) ① 의회사무과장은 <u>지방행정사무관 · 지방농업사무관 · 지방시설사무관 · 지방녹지사무 관</u> 으로 보한다.	제2조(사무과장) ① ----- <u>지</u> <u>방행정사무관 · 지방농업사무관 ·</u> <u>지방시설사무관 · 지방녹지사무관</u> <u>· 지방공업사무관</u> ----- -----.
② 의회사무과에 의정팀, 의사팀 과 의회홍보팀을 두며, 각 팀장은 지방행정주사, 지방농업주사, 지방 시설주사, <u>지방녹지주사</u> 로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지</u> <u>방녹지주사, 지방공업주사</u> ----- -----.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「별표」

전문위원별 직급(제3조관련)

위원회명	직 위	직 급	비고
운영행정위원회	전문위원	지방행정사무관 ·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· 지방공업사무관	
농업복지위원회	전문위원	지방행정사무관 ·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·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	

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- 임실군의회 김종규 의원

관련법령

□ 『지방자치법』

제102조(사무처 등의 설치) ① 시·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,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.

②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의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, 사무국·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 및 직원(이하 제103조,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“사무직원”이라 한다)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□ 『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』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